

1994. 10.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1. 심 사 경 위 .....	47
2. 제안설명 요지 .....	47
가.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 .....	47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 규모 .....	48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 .....	49
3. 검토보고 요지 .....	50
가. 세입부문 .....	50
나. 세출부문 .....	51
4. 주요지적사항 .....	53
5. 심 사 결 과 .....	53
6. 소수의견 요지 .....	53
7. 기타필요한 사항 .....	53

#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 9. 27.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1994. 10. 17

다. 상 정 일 자 : 제107회 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4. 10. 18) 상정

질의답변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유 의 재 )

가.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1)	세 결 산 입 액 (2)	세 결 산 출 액 (3)	세 계 잉 여 금
합 계	582,701,524	617,586,833	405,505,499	112,181,334
일 반 회 계	344,136,042	384,925,287	321,078,752	63,846,535
특 별 회 계	238,565,482	232,661,546	184,326,747	48,334,799
· 공영개발사업	71,337,755	65,534,031	29,826,060	35,707,971
· 지역개발기금	74,731,402	75,794,487	71,363,621	4,430,866
· 중기운영관리	1,069,406	957,881	808,759	149,122
· 주 택 사 업	2,247,914	2,679,490	2,130,400	549,090
· 의료보호기금	12,058,184	12,062,622	11,827,529	235,093
· 새마을소득지원	112,100	114,130	56,580	57,550
· 공유림관리	957,136	1,013,767	364,028	649,739
· 지방양여금관리	70,757,867	69,207,771	63,396,583	5,811,188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000,000	3,000,152	2,996,290	3,862
· 대청호대책	2,293,718	2,297,215	1,556,897	740,318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징 결 정 액 (2)	수 납 액 (3)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합 계	582,701,524	640,244,191	617,586,833	348,752	22,308,606
일 반 회 계	344,136,042	406,140,057	384,925,287	348,752	20,866,018
특 별 회 계	238,565,482	234,104,134	232,661,546	-	1,442,588
· 공 기 업	146,069,157	142,771,106	141,328,518	-	1,442,588
-공영개발사업	71,337,755	66,976,619	65,534,031	-	1,442,588
-지역개발기금	74,731,402	75,794,487	75,794,487	-	-
· 중기운영관리	1,069,406	957,881	975,881	-	-
· 주 택 사 업	2,247,914	2,679,490	2,679,490	-	-
· 의료보호기금	12,058,184	12,062,622	12,062,622	-	-
· 새마을 소득	112,100	114,130	114,130	-	-
· 공유림관리	957,136	1,103,767	1,103,767	-	-
· 지방양여금 관리	70,757,867	69,207,771	69,207,771	-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000,000	3,000,152	3,000,152	-	-
· 대청호대책	2,293,718	2,297,215	2,297,215	-	-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5,827억 152만 4천원 대비 106.0%인 6,402억 4,419만 1천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예산액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575억 4,266만 7천원은 일반회계에서 118.0%인 6,200억 401만 5천원이 초과 징수되고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보다 44억 6,134만 8천원이 적게 징수되었음.
- 미수납액 223억 860만 6천원은 일반회계가 93.5%인 208억 6,601만 8천원 특별회계가 14억 4,258만 8천원으로 6.5%임.
- 불납결손액 3억 4,875만 2천원의 내역은 일반회계가 3억 4,875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음.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지 출 원 인 행 위 액 (2)	지 출 액 (3)	다 음 년 도 이 월 액 (5)	불 용 액
합 계	582,701,524	527,802,628	505,405,499	24,108,182	53,187,843
일 반 회 계	344,136,042	327,351,786	321,078,752	7,847,830	15,209,460
특 별 회 계	238,565,482	200,450,842	184,326,747	16,260,352	37,978,383
· 공 기 업	146,069,157	110,212,084	101,189,681	9,022,403	35,857,073
-공영개발사업	71,337,755	38,848,463	29,826,060	9,022,403	32,489,292
-지역개발기금	74,731,402	71,363,621	71,363,621		3,367,781
· 중기운영관리	1,069,406	808,759	808,759		260,647
· 주 택 사 업	2,247,914	2,130,400	2,130,400		117,514
· 의료보호기금	12,058,184	11,827,529	11,827,529		230,655
· 새마을소득지원	112,100	56,580	56,580		55,520
· 공유림관리	957,136	364,028	364,028		593,108
· 지방양여금 관리	70,757,867	70,498,275	63,396,583	7,237,949	123,335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000,000	2,996,290	2,996,290		3,710
· 대청호 대책	2,293,718	1,556,897	1,556,897		736,821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5,872억 152만 4천원 대비 평균 86.7%인 5,054억 549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93.3%,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77.3%로서 일반회계는 정상적인 결산이라 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는 부진한편임.
- 특히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 9억 5,713만 6천원에 비해 결산액이 3억 6,402만 8천원으로 38.0%의 매우 저조한 집행이었음.
-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이 41.8%만이 집행된 것은 이는 가경 3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와 예비비 357억 7,460만 2천원이 집행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며,
-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50.5%가 집행되었는데 이는 농고생 학자금지원사업으로 기지원된 회수금 이용및 신청자 감소로 인하여 집행을 못한 때문임.

### 3. 검토보고요지

( 보고자 : 전문위원 목 원 근 )

#### 세입부분

< 일반회계 >

##### 1) 지방세 예산 과소 추계

○ 지방세 목표액 956억 94백만원 대비 1,337억 75백만원을 수납하여 380억 81백만원을 초과징수한 것은 세수증대 노력때문이기도하나,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과소책정한 결과라고 볼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 2) 미수납 징수대책 강구

자체재원인 지방세및 세외수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액보다 497억 86백만원이 초과징수되었고, 그 내역은 지방세 380억 81백만원, 세외수입 117억 23백만원으로 이는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지만, 징수결정액중에는 행불자,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등으로 인하여 미수금이 지방세에서 190억 26백만원, 세외수입에서 18억 40백만원 총 208억 66백만원에 달하는 바, 미수액중에는 취득세가 34억 15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152억 56백만원으로 이는 고질체납자 미수액임으로 이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이 요구됨.

##### 3) 불납결손 대책

일반회계의 불납결손액은 3억 4,875억 2천원으로 매년 시효소멸의 중단조치등 법적조치대책강구를 지적하였으나 행불자 22.9%, 무재산 62.7%, 시효소멸 12.8% 기타 1.6%등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음은 세원발굴 못지않게 적극적이고 효율성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4) 예산편성의 부적정

세입금액의 증가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초과징수액 380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많은 재원을 사장시키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세입이 발생하는 모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야 하겠음.

## 세출부문

### < 일반회계 >

#### 1) 불용액 과다발생

'93년도 예산액 3,441억 3,604만 2천원중 집행액은 3,210억 7,875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4.4%인 152억 94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 및 기타가 81.6%인 124억 1,331만 4천원으로 이는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므로 확정예산은 치밀한 계획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하겠음.

#### 2) 세출예산 전용과다

예산전용은 '92년도에 4건 '93년도에 17건으로 예산전용은 최소한의 예산을 증감조정하여 세출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확대운용할시에는 세출예산 전용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예산제도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화해야 할 것임.

#### 3) 세출예산중 미집행 사업 시정

세출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억제해야하고, 책정된 예산은 변경사유가 생기면 다음추경에 바로 조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의회사무처 용역비의 9건 16억 6,431만 9천원이 전액 예산조정치않고 불용처리된 것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 4) 결산잉여금 처리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결산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93년말 채무액 137억 72백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결산잉여금 559억 51백만원 전액을 '94 회계년도로 이월한 것은 채무조기상환에 의한 재정부담 경감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봄.

5) 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

순세계 잉여금의 예산반영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실적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급적 정확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에 250억원,  
추경예산안 309억 51백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지  
못하였음.

< 특별회계 >

예산액 2,385억 6,548만 2천원의 77.3%에 해당하는 1,843억 2,674만 7천원을 집행하고  
162억 6,035만 2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79억 7,838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각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봄.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은 공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영개발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임.



#### 4. 주요지적사항

- 없음

#### 5. 심사결과

- 도 원안대로 가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 부 :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부.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승인(안) 1부.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1부.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1)	세 결 산 액 (2)	세 결 산 액 (3)	세 계 잉 여 금
합 계	582,701,524	617,586,833	405,505,499	112,181,334
일 반 회 계	344,136,042	384,925,287	321,078,752	63,846,535
특 별 회 계	238,565,482	232,661,546	184,326,747	48,334,799
· 공영개발사업	71,337,755	65,534,031	29,826,060	35,707,971
· 지역개발기금	74,731,402	75,794,487	71,363,621	4,430,866
· 중기운영관리	1,069,406	957,881	808,759	149,122
· 주택 사업	2,247,914	2,679,490	2,130,400	549,090
· 의료보호기금	12,058,184	12,062,622	11,827,529	235,093
· 새마을소득지원	112,100	114,130	56,580	57,550
· 공유림관리	957,136	1,013,767	364,028	649,739
· 지방양여금관리	70,757,867	69,207,771	63,396,583	5,811,188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000,000	3,000,152	2,996,290	3,862
· 대청호대책	2,293,718	2,297,215	1,556,897	740,318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승인(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징 결 정 수 액 (2)	수 납 액 (3)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합 계	582,701,524	640,244,191	617,586,833	348,752	22,308,606
일 반 회 계	344,136,042	406,140,057	384,925,287	348,752	20,866,018
특 별 회 계	238,565,482	234,104,134	232,661,546	-	1,442,588
· 공 기 업	146,069,157	142,771,106	141,328,518		1,442,588
-공영개발사업	71,337,755	66,976,619	65,534,031	-	1,442,588
-지역개발기금	74,731,402	75,794,487	75,794,487	-	-
· 중기운영관리	1,069,406	957,881	975,881	-	-
· 주 택 사 업	2,247,914	2,679,490	2,679,490	-	-
· 의료보호기금	12,058,184	12,062,622	12,062,622	-	-
· 새마을 소득	112,100	114,130	114,130	-	-
· 공유림관리	957,136	1,103,767	1,103,767	-	-
· 지방양여금 관리	70,757,867	69,207,771	69,207,771	-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000,000	3,000,152	3,000,152	-	-
· 대청호대책	2,293,718	2,297,215	2,297,215	-	-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지출원인액 행 위 액 (2)	지 출 액 (3)	다음년도 이월액 (5)	불 용 액
합 계	582,701,524	527,802,628	505,405,499	24,108,182	53,187,843
일 반 회 계	344,136,042	327,351,786	321,078,752	7,847,830	15,209,460
특 별 회 계	238,565,482	200,450,842	184,326,747	16,260,352	37,978,383
· 공 기 업	146,069,157	110,212,084	101,189,681	9,022,403	35,857,073
-공영개발사업	71,337,755	38,848,463	29,826,060	9,022,403	32,489,292
-지역개발기금	74,731,402	71,363,621	71,363,621		3,367,781
· 중기운영관리	1,069,406	808,759	808,759		260,647
· 주 택 사 업	2,247,914	2,130,400	2,130,400		117,514
· 의료보호기금	12,058,184	11,827,529	11,827,529		230,655
· 새마을소득지원	112,100	56,580	56,580		55,520
· 공유림관리	957,136	364,028	364,028		593,108
· 지방양여금 관리	70,757,867	70,498,275	63,396,583	7,237,949	123,335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000,000	2,996,290	2,996,290		3,710
· 대청호 대책	2,293,718	1,556,897	1,556,897		736,821